

의안번호	2201775
의 퇴 인	김은혜 의원
회 답 일	2024. 9. 30.
추 계 번호	24F19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 조정 등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를 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2조 3,068억원, 2029년 2조 3,06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조 5,340억원(연평균 2조 3,0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및 증여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 (안 제18조)	-713	-713	-713	-713	-713	-3,563	-713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조정 (안 제21조제1항)	-11,424	-11,424	-11,424	-11,424	-11,424	-57,120	-11,424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 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 향조정(안 제24조 단서)		추	정	곤	란		
상속세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 25조제1항)		추	정	곤	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 (안 제53조)	-10,931	-10,931	-10,931	-10,931	-10,931	-54,655	-10,93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향조 정 (안 제53조의2)		추	정	곤	란		
증여세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 55조)		추	정	곤	란		
합 계	-23,068	-23,068	-23,068	-23,068	-23,068	-115,340	-23,068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 - 기초공제액: (현행) 2억원 → (개정안) 5억원	
2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3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의 상향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초과 → (개정안) 10억원 초과	
4	안 제25조제1항(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상속세 물가연동제 도입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뺀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여 과세최저한 산정	
5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이하 → (개정안) 10억원 이하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 시 상속세의 세수변화가 없음
6	안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증여재산 공제 상향조정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현행) 6억원 → (개정안) 12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1억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현행) 2천만원 → (개정안) 4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1억원	
7	안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향조정 - 혼인·출산공제: (현행) 1억원 → (개정안) 2억원	
8	안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증여세 물가연동제 도입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세 공제액 등을 뺀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여 과세최저한 산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기초공제)	○	
2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3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25조제1항(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변화가 없음
6	안 제53조(증여재산공제)	○	
7	안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기초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8.6%)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기초공제액에 적용할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와 실효세율은 기초공제와 동일
- 향후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최근 5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적용대상 건수 연평균 비율(2.9%)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증여세 과세대상 건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건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대상 건수의 연평균 비중(40.5%)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87,969건)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에 적용할 실효세율은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며,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최근 5년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적용대상 건수 연평균 비율(56.7%)을 반영하여 추정한 증여건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증여세 과세대상 건수와 실효세율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
 -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적용대상 건수 연평균 비율(5.1%)을 반영하여 추정한 증여건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증여세 과세대상 건수와 실효세율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
- 이외에도 개정안은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현행 5억원 초과, 개정안 10억원 초과)한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별 상속공제액 및 유증 등 상속재산 차감 항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속공제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현행 5억원 이하, 개정안 10억원 이하)은 동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액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 증감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물가조정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물가조정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대한

공제 실적 자료의 부재와 혼인 및 출산 증여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

(1) 제도개요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 공제

- 기초공제액: (현행) 2억원 → (개정안) 5억원

(2) 추계방법

-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기초공제 적용대상자의 기초공제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기초공제액 적용대상 피상속인을 기초로 각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기초공제액에 각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가) 기초공제 적용대상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기초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8.6%)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비율은 8.6%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726	8.7%
2020년	10,181	885	8.7%
2021년	12,749	1108	8.7%
2022년	15,760	1320	8.4%
2023년	19,944	1718	8.6%
연평균비율	-	-	8.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0%) 적용

[표 3]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19년	345,290 (100.0)	8,357 (2.4)	336,933 (97.6)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336,365 (100.0)	13,398 (4.0)	322,967 (96.0)

주: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5년 이후 1,154명으로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8.6%)을 반영하여 기초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기초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21.0%에서 500억원 초과 0.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4]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135 (18.6)	207 (23.4)	245 (22.1)	271 (20.5)	348 (20.3)	21.0
20억원 이하	287 (39.5)	339 (38.3)	415 (37.5)	527 (39.9)	597 (34.7)	38.0
30억원 이하	127 (17.5)	135 (15.3)	196 (17.7)	183 (13.9)	308 (17.9)	16.4
40억원 이하	51 (7.0)	63 (7.1)	81 (7.3)	108 (8.2)	145 (8.4)	7.6
50억원 이하	34 (4.7)	42 (4.7)	49 (4.4)	57 (4.3)	88 (5.1)	4.7
100억원 이하	55 (7.6)	55 (6.2)	70 (6.3)	106 (8.0)	128 (7.5)	7.1
500억원 이하	33 (4.5)	40 (4.5)	46 (4.2)	61 (4.6)	93 (5.4)	4.7
500억원 초과	4 (0.6)	4 (0.5)	6 (0.5)	7 (0.5)	11 (0.6)	0.5
합계	726 (100.0)	885 (100.0)	1,108 (100.0)	1,320 (100.0)	1,718 (100.0)	100.0

주: ()는 전체 기초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10.8%에서 500억원 초과 43.1%로 나타남

[표 5]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실효세율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10억원 이하	417,955	40,507	9.7	518,653	56,094	10.8	640,338	70,788	11.1	805,131	94,658	11.8	10,748	1,144	10.6	10.8
20억원 이하	15,097	2,520	16.7	18,163	3,087	17.0	24,060	4,186	17.4	29,312	5,134	17.5	35,192	6,122	17.4	17.2
30억원 이하	12,122	2,744	22.6	13,089	3,019	23.1	17,512	4,071	23.2	21,315	5,105	24.0	28,858	6,754	23.4	23.3
40억원 이하	8,052	2,140	26.6	8,405	2,200	26.2	11,538	3,112	27.0	14,398	3,926	27.3	21,632	5,903	27.3	26.9
50억원 이하	5,017	1,425	28.4	5,841	1,725	29.5	8,400	2,446	29.1	10,558	3,199	30.3	15,424	4,622	30.0	29.5
100억원 이하	15,421	5,155	33.4	17,290	5,792	33.5	21,070	7,375	35.0	26,975	9,323	34.6	33,984	11,735	34.5	34.2
500억원 이하	18,835	7,083	37.6	26,036	10,485	40.3	33,592	13,727	40.9	38,323	15,618	40.8	51,370	20,647	40.2	40.0
500억원 초과	16,782	5,854	34.9	33,103	15,128	45.7	31,267	12,834	41.0	314,285	148,957	47.4	142,281	65,870	46.3	43.1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상속재산규모별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3억원=5억원-2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713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증가액(3억원)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0억원 이하 78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8억원 등 총 713억원으로 추계됨

(3) 추계결과

-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713억원, 2029년 713억원 등 5년간 총 3,563억원(연평균 7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기초공제액 적용대상자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6] 향후 5년간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713	713	713	713	713	3,563	713

나.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

(1) 제도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①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②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일괄공제 적용을 받음
 - 배우자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액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2) 추계방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일괄공제 적용대상자의 일괄공제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일괄공제액 적용대상 피상속인을 기초로 각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기초공제액에 각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가) 일괄공제 적용대상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평균 비율은 93.3%을 나타내고 있음

[표 7]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연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7,796	93.3%
2020년	10,181	9,507	93.4%
2021년	12,749	11,883	93.2%
2022년	15,760	14,717	93.4%
2023년	19,944	18,609	93.3%
연평균비율	-	-	9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5년 이후 12,502명으로 가
정하여 추계
 - 위에서(표 3)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
(93.3%)을 반영하여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
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일괄공제 피상속인수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28.7%에서 500억원 초과 0.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8]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대상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2,220 (28.5)	2,878 (30.3)	3,363 (28.3)	4,149 (28.2)	5,219 (28.0)	28.7
20억원 이하	3,299 (42.3)	4,107 (43.2)	5,247 (43.5)	6,506 (44.2)	7,838 (42.1)	43.2
30억원 이하	1,112 (14.3)	1,190 (12.5)	1,558 (13.1)	1,924 (13.1)	2,574 (13.8)	13.4
40억원 이하	452 (5.8)	477 (5.0)	628 (5.3)	774 (5.3)	1,189 (6.4)	5.5
50억원 이하	201 (2.6)	240 (2.5)	336 (2.9)	422 (2.8)	602 (3.2)	2.8
100억원 이하	359 (4.6)	415 (4.4)	491 (4.2)	633 (4.1)	783 (4.2)	4.3
500억원 이하	142 (1.8)	188 (2.0)	241 (2.0)	288 (2.0)	369 (2.0)	2.0
500억원 초과	11 (0.1)	12 (0.1)	19 (0.2)	21 (0.2)	35 (0.2)	0.2
합계	7,796 (100.0)	9,507 (100.0)	11,883 (100.0)	14,717 (100.0)	18,609 (100.0)	100.0

주: ()는 전체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속재산규모별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5억원=10억원-5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1조 1,424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증가액(5억원)에 실효세율(표 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0억원 이하 1,935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41억원 등 총 1조 1,424억원으로 추계됨

(3) 추계결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1조 1,424억원, 2029년 1조 1,424억원 등 5년간 총 5조 7,120억원(연평균 1조 1,4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일괄공제액 적용대상자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9] 향후 5년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11,424	11,424	11,424	11,424	11,424	57,120	11,424

다.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조정

(1)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가) 제도개요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음
 - 공제액: (현행) 6억원 → (개정안) 12억원

(나) 추계방법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이하 ‘배우자공제’라고 함)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자의 상향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배우자공제액 적용대상자의 각 증여재산 규모별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배우자공제액에 각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 효과 추계

①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자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에서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증여건수를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배우자공제 적용건수 연평균 비율(2.9%)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비율은 2.9%를 나타내고 있음

[표 10]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구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A)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B)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증여건수 비율(B/A)
2019년	169,911	4,798	2.8%
2020년	183,499	5,532	3.0%
2021년	275,592	9,058	3.3%
2022년	252,412	6,218	2.5%
2023년	208,508	5,564	2.7%
연평균비율	—	—	2.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특이치 제외) 전체 증여건수(연평균 464,034건) 중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40.5%)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187,969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증여건수의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으며,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한 3년간의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40.5) 적용

[표 11]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증여건수	과세 증여건수	과세미달 증여건수
2019년	400,299 (100.0)	169,911 (42.4)	230,388 (57.6)
2020년	461,800 (100.0)	183,499 (39.7)	278,301 (60.3)
2021년	800,109 (100.0)	275,592 (34.4)	524,517 (65.6)
2022년	711,875 (100.0)	252,412 (35.5)	459,463 (64.5)
2023년	530,004 (100.0)	208,508 (39.3)	321,496 (60.7)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464,034 (100.0)	187,969 (40.5)	276,066 (59.5)

주: 1. ()는 전체 증여건수 대비 비율

2.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는 2025년 이후 5,360건으로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 추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 187,969건에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비율(2.9%)을 반영하여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배우자공제 적용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연평균 배우자공제 적용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억원 이하 구간 96.6%에서 500억원 이하 0.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2]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20억원 이하	4,515 (94.1)	5,423 (98.0)	8,925 (98.5)	5,988 (96.3)	5,348 (96.1)	96.6
30억원 이하	106 (2.2)	53 (1.0)	77 (0.9)	81 (1.3)	116 (2.1)	1.5
40억원 이하	38 (0.8)	19 (0.3)	15 (0.2)	39 (0.6)	70 (1.3)	0.6
50억원 이하	25 (0.5)	5 (0.1)	35 (0.4)	54 (0.9)	12 (0.2)	0.4
100억원 이하	38 (0.8)	8 (0.1)	2 (0.0)	43 (0.7)	14 (0.3)	0.4
500억원 이하	76 (1.6)	24 (0.4)	4 (0.0)	12 (0.2)	4 (0.1)	0.5
합계	4,798 (100.0)	5,532 (100.0)	9,058 (100.0)	6,218 (100.0)	5,564 (100.0)	100.0

주: ()는 전체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9.8%에서 500억원 초과 9.0%로 나타남

[표 13]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

증여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실효세율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1억원 이하	23,071	2,295	9.9	25,279	2,499	9.9	36,166	3,543	9.8	36,215	3,533	9.8	29,493	2,860	9.7	9.8
3억원 이하	59,400	6,753	11.4	63,701	7,172	11.3	99,543	11,551	11.6	89,437	10,294	11.5	71,624	8,162	11.4	11.4
5억원 이하	39,436	5,466	13.9	42,280	5,845	13.8	73,979	10,671	14.4	62,908	8,993	14.3	51,415	7,047	13.7	14.0
10억원 이하	58,969	8,901	15.1	62,696	9,537	15.2	117,664	18,753	15.9	91,994	14,471	15.7	72,963	11,034	15.1	15.4
20억원 이하	43,923	7,505	17.1	46,390	7,506	16.2	76,973	14,722	19.1	68,140	12,090	17.7	52,917	9,523	18.0	17.6

30억원 이하	20,339	3,381	16.6	21,849	3,402	15.6	29,024	5,908	20.4	28,128	5,657	20.1	23,573	4,401	18.7	18.3
40억원 이하	10,643	1,837	17.3	10,688	2,086	19.5	13,690	2,764	20.2	14,627	2,932	20.0	14,381	2,280	15.9	18.6
50억원 이하	8,086	1,608	19.9	5,331	1,395	26.2	9,115	1,932	21.2	10,057	1,787	17.8	7,220	1,550	21.5	21.3
100억원 이하	21,163	3,649	17.2	23,998	4,311	18.0	29,570	5,485	18.5	23,953	4,867	20.3	24,804	4,828	19.5	18.7
500억원 이하	70,007	6,402	9.1	48,217	6,723	13.9	89,572	8,122	9.1	69,651	13,242	19.0	50,910	9,385	18.4	13.9
500억원 초과	88,337	7,767	8.8	73,532	5,668	7.7	102,590	6,742	6.6	56,088	6,186	11.0	60,610	6,704	11.1	9.0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증여재산규모별 배우자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증여세 배우자공제액 상향조정(6억원=12억원-6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4,546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증여재산 규모별 배우자공제 증가액(6억원)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20억원 이하 4,349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21억원 등 총 4,546억원으로 추계됨

(다) 추계결과

-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4,546억원, 2029년 4,546억원 등 5년간 총 2조 2,730억원(연평균 4,5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건수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14] 향후 5년간 증여세 배우자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4,546	4,546	4,546	4,546	4,546	22,730	4,546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상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현행 공제액(5천만원)과 개정안에 따른 상향 공제액(1억원)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통합하여 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가) 제도개요

-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음
 - 공제액: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1억원

(나) 추계방법

-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이하 ‘직계존비속공제’라고 함)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자의 상향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직계존비속공제액 적용대상자의 각 증여재산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직계존비속공제액에 각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①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자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에서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증여건수를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연평균 비율(56.7%)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비율은 56.7%를 나타내고 있음

[표 15]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구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A)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B)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증여건수 비율(B/A)
2019년	169,911	97,709	57.5%
2020년	183,499	104,962	57.2%
2021년	275,592	166,275	60.3%
2022년	252,412	140,985	55.9%
2023년	208,508	110,165	52.8%
연평균비율	—	—	56.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는 2025년 이후 106,665건으로 가정하여 추계
 - － 위에서(표 15) 추정한 과세대상 적용 건수 187,969건에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56.7%)을 반영하여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적용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연평균 직계존비속공제 적용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구간 40.0%에서 500억원 초과 0.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6]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증여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억원 이하	39,777 (40.7)	43,524 (41.5)	64,397 (38.7)	56,257 (39.9)	43,308 (40.0)	40.0
3억원 이하	37,699 (38.6)	40,797 (38.9)	64,093 (38.5)	54,725 (38.7)	42,629 (38.7)	38.7
5억원 이하	9,199 (9.4)	9,529 (9.1)	16,967 (10.2)	13,630 (10.2)	11,192 (9.7)	9.7
10억원 이하	7,068 (7.2)	7,227 (6.9)	14,235 (8.6)	10,919 (7.7)	8,521 (7.6)	7.6
20억원 이하	2,483 (2.5)	2,398 (2.3)	4,598 (2.8)	3,658 (2.7)	2,921 (2.6)	2.6
30억원 이하	668 (0.7)	707 (0.7)	959 (0.6)	862 (0.6)	710 (.6)	0.6
40억원 이하	236 (0.2)	245 (0.2)	319 (0.2)	301 (0.3)	293 (0.2)	0.2
50억원 이하	116 (0.1)	87 (0.1)	142 (0.1)	129 (0.1)	114 (0.1)	0.1
100억원 이하	201 (0.2)	219 (0.2)	268 (0.2)	218 (0.2)	245 (0.2)	0.2
500억원 이하	210 (0.2)	185 (0.2)	259 (0.2)	246 (0.2)	194 (0.2)	0.2
500억원 초과	52 (0.1)	44 (0.0)	38 (0.0)	40 (0.0)	38 (0.0)	0.0
합 계	97,709 (100.0)	104,962 (100.0)	166,275 (100.0)	140,985 (100.0)	110,165 (100.0)	100.0

주: ()는 전체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증여재산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증여세 직계존비속공제액 상향조정(0.5=1억원-0.5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6,179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증여재산 규모별 직계존비속공제 증가액(0.5억원)에 실효세율(표 1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억원 이하 2,095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2억원 등 총 6,179억원으로 추계됨

[표 17] 증여세 직계존비속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2025년 기준
(단위: 건, 억원, %)

증여재산 과세가액 규모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A)	직계존비속공제 조정액(B)	직계존비속공제 증가액(C=A×B)	실효세율 (D)	세수감소액 (C×D)
1억원 이하	42,692	0.5	21,346	9.8	2,095
3억원 이하	41,281	0.5	20,641	11.4	2,359
5억원 이하	10,352	0.5	5,176	14.0	726
10억원 이하	8,141	0.5	4,070	15.4	628
20억원 이하	2,739	0.5	1,369	17.6	241
30억원 이하	680	0.5	340	18.3	62
40억원 이하	245	0.5	122	18.6	23
50억원 이하	103	0.5	51	21.3	11
100억원 이하	203	0.5	102	18.7	19
500억원 이하	191	0.5	96	13.9	13
500억원 초과	39	0.5	19	9.0	2
세수감소액 합계	6,179				

(다) 추계결과

- 증여세 직계존비속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6,179억원, 2029년 6,179억원 등 5년간 총 3조 894억원(연평균 6,1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증여세 과세대상 및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18] 향후 5년간 증여세 직계존비속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6,179	6,179	6,179	6,179	6,179	30,894	6,179

(3)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

(가) 제도개요

-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음
 - 공제액: (현행) 2천만원 → (개정안) 4천만원

(나) 추계방법

-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이하 ‘미성년자공제’라고 함)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의 상향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의 각 증여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미성년자공제액에 각 증여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①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자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에서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증여건수를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연평균 비율(5.1%)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비율은 5.1%를 나타내고 있음

[표 19]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가운데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구분	전체 과세대상 증여건수(A)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B)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증여건수 비율(B/A)
2019년	169,911	7,030	4.1%
2020년	183,499	7,754	4.2%
2021년	275,592	16,206	5.9%
2022년	252,412	15,132	6.0%
2023년	208,508	10,502	5.0%
연평균비율	-	-	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는 2025년 이후 9,502건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표 15) 추정한 과세대상 적용 건수 187,969건에 직계존비속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5.1%)을 반영하여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비율 추정

- 증여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연평균 미성년자공제 적용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구간 64.3%에서 500억원 이하 0.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0]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증여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억원 이하	4,277 (60.8)	5,034 (64.9)	10,470 (64.6)	10,008 (66.1)	6,814 (64.9)	64.3
3억원 이하	1,892 (26.9)	1,877 (24.2)	3,875 (23.9)	3,439 (22.7)	2,472 (23.5)	24.3
5억원 이하	433 (6.2)	383 (4.9)	883 (5.4)	806 (5.3)	560 (5.3)	5.4
10억원 이하	272 (3.9)	339 (4.4)	686 (4.2)	584 (3.9)	395 (3.8)	4.0
20억원 이하	93 (1.3)	98 (1.3)	231 (1.4)	215 (1.4)	154 (1.5)	1.4
30억원 이하	31 (0.4)	5 (0.1)	36 (0.2)	51 (0.3)	47 (0.4)	0.3
40억원 이하	10 (0.1)	6 (0.1)	7 (0.0)	12 (0.1)	37 (0.4)	0.1
50억원 이하	5 (0.1)	1 (0.0)	3 (0.0)	6 (0.0)	8 (0.1)	0.0
100억원 이하	12 (0.2)	9 (0.1)	7 (0.0)	7 (0.0)	6 (0.1)	0.1
500억원 이하	5 (0.1)	2 (0.0)	8 (0.0)	4 (0.0)	9 (0.1)	0.1
합 계	7,030 (100.0)	7,754 (100.0)	16,206 (100.0)	15,132 (100.0)	10,502 (100.0)	100.0

주: ()는 전체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증여재산규모별 미성년자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증여세 미성년자공제액 상향조정(0.2=0.4억원-0.2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205.7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증여재산 규모별 미성년자공제 증가액(0.5억원)에 실효세율(표 1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억원 이하 119.9억원에서 500억원 이하 0.1억원 등 총 205.7억원으로 추계됨

(다) 추계결과

- 증여세 미성년자공제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206억원, 2029년 206억원 등 5년간 총 1,028억원(연평균 2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증여세 과세대상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 건수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21] 향후 5년간 증여세 미성년자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206	206	206	206	206	1,028	206

(4)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증여세 배우자공제 등 증여재산 공제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2025년 1조 931억원, 2029년 1조 931억원 등 5년간 총 5조 4,655억원(연평균 1조 9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2] 향후 5년간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배우자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증여세 감소액	4,546	4,546	4,546	4,546	4,546	22,730	4,546
직계존비속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증여세 감소액	6,179	6,179	6,179	6,179	6,179	30,894	6,179
미성년자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증여세 감소액	206	206	206	206	206	1,028	206
합 계	10,931	10,931	10,931	10,931	10,931	54,655	10,931

4. 추계결과

-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 등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2조 3,068억원, 2029년 2조 3,06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조 5,340억원(연평균 2조 3,06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3]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감소액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액	713	713	713	713	713	3,563	713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액	11,424	11,424	11,424	11,424	11,424	57,120	11,424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액	10,931	10,931	10,931	10,931	10,931	54,655	10,931
합 계	23,068	23,068	23,068	23,068	23,068	115,340	23,06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